

2016년

농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 · 시행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으로의
표시도 허용

의무

2017년 1월 1일부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은 2016. 4. 27. 공포 · 시행되었으며, 개정사항에 따라 단속 시작 시점은
다르게 적용(2017. 1. 1. 또는 2017. 7. 1.)

원산지표시 공통사항

Q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정답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모든 사람



※ 영업점 형태와 상관없이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가공품) 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원산지표시 의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 식 품
부정유통신고

1588-8112
www.naqs.go.kr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① 국산 농축산물 : 220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

② 수입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③ 국내에서 가공한 농축산물 가공품 : 257품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176,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정의 품목 4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41

※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수산물 가공품 : 260품목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관리)

■ 표시대상 품목 확대 · 분류 조정(2016. 4. 27. 시행)

국산농산물 품목 신규 추가

* 의무규정 : 2017. 1. 1. 부터

- 화훼류(절화류 11개)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엽경채류 · 균채류(2개) : 쑥, 순무

- 약용작물류(1개) : 백수오

* 과실류 중 감귤류 품목 분류 정비 및 약용작물 중 혼합 사용된 품목 명칭 정비

농산물 가공품 품목 추가 및 정비

* 의무규정 : 2017. 7. 1. 부터

- 과자, 빵류 품목 예시 삭제 및 가공식품유형 분류 일부 정비

- 건강기능식품(6개) 품목 :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마늘

- 건강기능식품 중분류 삭제에 따른 정비

수산물 가공품 품목 신규 추가

* 의무규정 : 2017. 7. 1. 부터

- 건강기능식품(13개) 품목 : 식이섬유,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스쿠알렌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원산지 표시 기준
국산의 경우	<p>“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 채취 · 사육한 지역의 “시 · 도명”이나 “시 · 군 · 구명”으로 원산지 표시</p> <p>예시 고사리(국산), 고사리(국내산) 또는 고사리(강원도), 고사리(원주시)</p>
외국산의 경우	<p>「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 통관시 원산지 표시</p> <p>예시 삼겹살(칠레산), 쇠고기(호주산)</p>

가. 국산으로 생산 · 채취 · 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축산물을 혼합한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 · 도명 또는 시 · 군 · 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원주시 15%)를 혼합한 경우

⇒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등) 또는 쌀(국산), 쌀(국내산)

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외국산만을 혼합한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국가(지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태국산 10%)를 혼합한 경우

⇒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정답 ①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②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 · 각인 ·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표시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 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글자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포장 표면적이 3,000cm²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② 포장 표면적이 50cm² 이상 ~ 3,000cm²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③ 포장 표면적이 50cm²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p>*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 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p>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의미함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 분	제작 크기 기준
풋 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안내표시판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는 사용 불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예시)



농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Q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답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 가공품 원료 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가공품 포함)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표시

원칙



종전 예시

소고기(국내산)
토란줄기(중국산)
대파, 마늘, 당근 등

2가지 원료
원산지표시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현행 예시

소고기(국내산)
토란줄기(중국산)
대파(중국산)
마늘, 당근 등

3 순위 원료까지
원산지표시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 의무규정 : 개정사항은 2017. 1. 1. 부터 단속

예시 호주산 밀가루 70%, 중국산 팥양금 20%, 중국산 동부 5%를 혼합하여 빵을 제조한 경우
⇒ 빵 : 밀가루(호주산), 팥양금(중국산), 동부(중국산)

① 98% 이상 사용된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 1가지 표시

예시 부침가루 : 밀가루 98%, 식염 2% ⇒ 부침가루 : 밀가루(밀 : 미국산)

② 2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 2가지 표시

예시 국산 찹쌀가루 75%, 중국산 팥양금 24%를 혼합하여 찹쌀떡을 제조한 경우

⇒ 찹쌀떡 : 찹쌀가루(국내산), 팥양금(중국산)

예외

* 의무규정 : 개정사항은 2017. 1. 1. 부터 단속

③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가장 높은 2가지와 고춧가루 표시

예시 국내산 배추 70%, 국내산 무 20%, 중국산 고춧가루 5%를 혼합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한 경우

⇒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 무(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 의무규정 : 개정사항은 2017. 1. 1. 부터 단속

④ 원료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제품명의 일부)으로 사용한 경우, 위의 배합비율 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를 추가하여 표시

예 외

- 예시 국내산 멩쌀 50%, 중국산 동부 23%, 중국산 팥양금 15%, 국내산 꿀 10% 등을 혼합하여 떡을 제조하고 제품명을 “꿀떡”이라고 한 경우
→ 꿀떡 : 멩쌀(국내산), 동부(중국산), 팥양금(중국산), 꿀(국내산)

- ⑤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 제외)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 가능



가공품의 사용 원료 중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원 칙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

- 예시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멕시코산 20%)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경우
→ 고춧가루 :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가.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 ① 혼합 비율을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국 이상 표시 가능한 경우(단, 국내산의 혼합 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
(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나)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 예시 최근 3년 이내 밀가루(미국 30%, 중국 70% → 미국 50%, 중국 50% → 미국 70%, 중국 30%) 혼합비율이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 밀가루(밀 : 미국산, 중국산)
- ② 원산지 혼합 비율의 변경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예 외

나. 원료의 수급사정으로 동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 ① 원료 원산지를 “외국산(○○국 · ○○국 · ○○국 등)” 또는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종 전	현 행
규정 없음	<p>* 의무 규정 : 개선사항은 2017. 7. 1. 부터 단속</p> <p>(가)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최근 1년 동안 3개국 변경 포함)</p> <p>(나)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 되는 신제품의 경우</p>

- ②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 표시방법 :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

- (가) 원산지 표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 추가 또는 갱신
(나) 원산지 표시 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



원산지 : 오렌지[외국산(국가명은 QR코드에 별도 표시)]
또는 오렌지[외국산(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 표시)]



www.naqs.go.kr

③ 원료 원산지를 국가명 생략하고 “외국산” 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종전

- (가)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최근 1년 동안 3개국 변경 포함)
 - (나)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의 경우
 - (다)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경우 “수입산” 으로 표시

현행

- (가)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6개국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나)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다) 복합원재료 내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의무 규정 : 개선사항은 2017. 7. 1. 부터 단속



가공품의 사용 원료 중 복합원재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일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구 분

제작 크기 기준

국내 가공 복합원재료 사용

- ①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표시

* 복합원재료 배합비율이 98%이상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만 표시 가능

예시 고추장 50%(국산 찹쌀 40%, 중국산 고춧가루 40%, 밀가루 20%), 콩 25%, 양파 15%, 마늘 5%, 고추 5%를 혼합하여 양념장을 제조한 경우 ⇒ 양념장 [고추장(찹쌀 : 국산, 고추 : 중국산)50%, 콩(중국산)25%, 양파(국산)15%]

수입한 복합원재료 완제품 사용

- ②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1가지 표시

수입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 사용 김치류인 경우

고춧가루와 고춧가루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가지 표시

* 신규규정으로 2017. 7. 1. 부터 단속



가공품에 원산지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정답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표시 위치를 제외한 구체적인 방법은 농축산물의 경우를 준용

표시 위치

- ① 원칙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 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 ② 허용 :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가능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공통사항

표시 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 매체 특정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말”로 표시

글자의 위치 · 크기 · 색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 “말”로 표시할 경우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함

■ 통신매체별 표시방법

구 분	전자매체 이용(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표시 위치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② 허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 이용 가능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②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표시 시기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 글자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이상 ② 허용: 광고 면적 기준 8~20포인트 이상 * 농축산물 포장재 표시기준 준용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외국산 농축산물을 이식 · 이동하거나 외국산 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정답 원칙 : 원산지 변경은 되지 않으며, 해당 “수입 국가명”을 그대로 표시

원산지 미변경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생장시킨 경우에는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호접란 등 난초를 꽂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 · 도명”, “시 · 군 · 구명”으로 표시

예시 수입 마늘 · 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예시 종균을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암착대목(배지)에 접종 · 배양한 것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 · 수확한 경우. 다만, ()내에 “접종 · 배양: ○○국”을 함께 표시

종 전 버섯(국내산)

현 행 버섯[국내산(접종 · 배양: ○○국)]

* 의무 규정 : 개선사항은 2017. 7. 1. 부터 단속

소의 국내 이동에 따른 원산지

국내에서 출생 · 사육 · 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특정 “시 · 도명 또는 시 · 군 · 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도축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

Q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0년 이하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 내용 등)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미표시	농축산물	표시대상 농축산물의 원산지	5만원 ~ 1,000만원 이하	
	가공품	표시대상 농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20만원 ~ 1,0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최근 1년간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 음식점 및 통신판매의 경우는 별도의 개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관련법령 및 고시)